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</small>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. 29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거복지 기획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윤종수, 사무관 이민규, 주무관 서민지 • ☎ (044)201-3355, 3361
보 도 일 시		2017년 1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30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	

‘홀몸어르신 안심 센서’ 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

-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-

□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(홀몸어르신 안심 센서)가 설치된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」(약칭 주거약자법)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(1. 30.)되었다고 밝혔다.

□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주거약자용 주택*에 ‘홀몸 어르신 안심센서’ 설치

*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(65세 이상) 및 장애인,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(영구·국민·행복)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(수도권 8%, 지방 5%)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함

○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-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 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(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)되는 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”가 설치된다.

□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·시행될 예정으로

-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33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